

사료검사 제도에 있어서의 문제점

—현행사료 검사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헤쳐 본다—

<편집부>

1. 현행 사료검사제도

현재 사료 품질 향상을 위하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배합사료 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 검사 체계, 검사방법, 사료성분, 분석기관, 사료검사 결과 처리 사항을 살펴 본다.

가) 법적 근거

1) 사료관리법 제3장 사료의 품질개량 제7조~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배합사료 공장의 등록, 사료 성분량의 고시, 등록증의 교부, 사료의 감량비율, 사료의 성분량 보증표, 허위 기재 행사 금지, 이물혼합의 금지, 사료 검사, 사료판매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사료 검사 체계

사료 관리법에 근거하여 농림부가 실시하고 있는 사료 검사 체계를 사료검사 업무취급요령에 의하여 도시하면 좌하와 같다.

3) 사료성분 분석기관

농촌진흥청의 축산시험장 영양생리연구실에서 농수산부 및 각 시·도의 사료검사 공무원이 배합사료 공장이나 사료상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료를 채취하여 분석기관인 축산시험장에 송부하여 분석하고 있다. 축산시험장에서는 송부되어 온 시료를 조속한 시일내에 분석하여 결과를 분석의뢰기관에 통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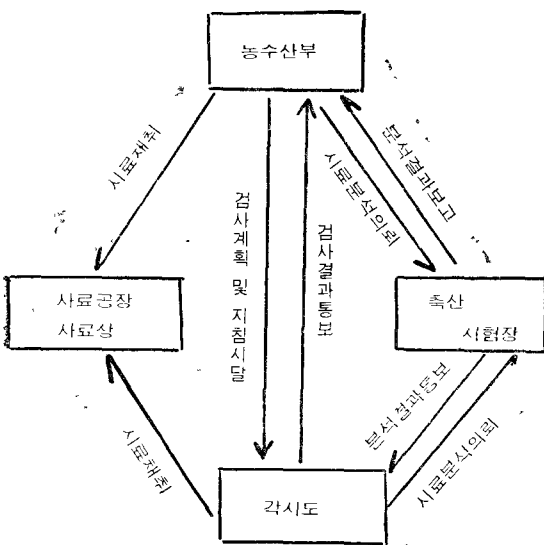
4) 분석결과에의한 행정조치 및 검사결과 공표

농수산부 및 각 시·도는 축산시험장에서 분석된 결과에 따라 위배사료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그 결과를 각 시·도에서는 농수산부에 보고하고 농수산부는 이를 집계하여 월간축산잡지 농협신문등에 공표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양측가는 이와같은 사료검사결과 공표내용을 검토하여 불량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사료 검사 결과(1968—72)

농수산부가 공표한 사료검사결과를 사료별, 위배내역, 성분별위반 및 행정처분을 구분하여 보기로 한다.

위배사료를 년도별로 보면 1968년에 19.6% 1969년에 14.7% 1970년에 15.9% 1971년 9.1%로 줄어들고 있어 사료 품질의 향상을 말해 준다.



가. 사료별 위반 내역 (1968~1972)

사료별	1968			1969			1970			1971			1972		
	검사	위반	%	검사	위반	%	검사	위반	%	검사	위반	%	검사	위반	%
어린 병아리	141	55	39.0	88	26	29.5	67	15	22.3	114	9	7.9	100	14	14.0
중 "	107	21	19.6	112	15	13.5	78	10	12.8	96	8	8.3	98	5	5.0
큰 "	8	1	12.5	19	3	15.8	38	6	15.8	67	6	9.0	141	9	6.4
성 계 용	351	53	15.0	433	50	11.5	376	49	13.0	471	53	11.3	432	54	12.5
부 로 일 터 용	14	2	14.2	52	9	17.3	83	23	27.7	143	5	3.5	233	12	5.2
소 계	621	132	21.2	704	103	14.6	642	103	16.0	891	81	9.1	1,004	94	9.4
양 돈	17	1	5.8	14	1	7.1	6	1	16.6	15	3	20.0	46	5	10.8
축 우	19	—	—	19	0	0	13	—	0	48	2	4.2	84	2	2.4
기 초	22	—	—	11	6	54.5	1	1	100	1	1	100	5	2	40.0
계	679	133	19.6	748	110	14.7	662	105	15.9	955	87	9.1	1,139	103	9.0

나. 성분별 위반

	1968	1969	1970	1971	1972
조 단 백 질 부 족	69	74	38	61	61
조 지 방 부 족	17	6			1
조 섬 유 초 과	14	17	17	7	1
조 회 분 초 과	15	19	13	7	27
조 단 백 조 지 방 부 족	4	3			1
조 단 백 부 족 조 섬 유 초 과	7	2	2	3	
조 단 백 부 족 조 회 분 초 과	6	3	4	2	10
조 섬 유 조 회 분 초 과	4	1	1	1	1
조 단 백 초 과 조 회 분 초 과					
조 단 백 조 지 방 부 족			1		
조 섬 유 조 회 분 초 과					
조 단 백 조 지 방 부 족			30	6	1
조 단 백 조 지 방 부 족	1				
조 단 백 조 섬 유 조 회 분	1				
Total	133	110	105	87	103
총 검 사 건 수	679	748	662	955	1,139
조 단 백 위 반	83	83	44	66	72
위 반	12.5	11.0	6.6	6.9	6.6

다. 행정처분 내역

구 분	1968	1969	1970	1971	1972
경 고	94	84	84	72	89
해당사료의 3개월제조정지	30	25	11	14	12
해당사료의 성분등록취소	9	1	—	1	2
계	133	110	105	87	103
경 고 조 치 %	70.6	76.3	80.0	82.7	86.4

1회 위반인 경우에 취해지는 경고조치가 1968년도(70.6%)에 비해 1972년도(86.4%)로 바뀐

것은 사료 메이커가 사료 품질보장에 주도면밀한 연구와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사료검사 제도 비교

(미국 · 일본 · 한국)

가. 한 국

1) 배합사료의 공정규격상의 표시

조단백질, 조지방의 최소량

조섬유 · 조회분의 최대량

항생물질, 비소제의 최대량(현재 실시 단계)

2) 사료검사 기관

사료검사기관이 독립되어 있지 않고 사료검사공무원 별로 임명하여 시료채취를 담당하고 축산시험장의 가축영양생리실(사료 분석실)에서 성분을 분석하고 있다.

나. 미 국

1) 공정규격

가) 주에 따라 다르며 배합사료의 공정규격은 대체로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은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표시 : 유통되는 모든 사료는 정미중량, 상품명 또는 상품제조업자의 성명 및 주소 조단백질의 최소함량(%) 조지방의 최저함량, 조지방의 최저함량, 사용된 원료의 명칭, 등을 표시해야 한다.

② 사용되는 원료의 명칭은 통용되는 것이여

야 한다.

③ 광물질 사료가 첨가된 것은 최저 및 최고 함량의 칼슘, 인의 최저함량, 옥도의 최저함량, 소금의 최저 및 최고 함량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순전히 광물질, 비타민 첨가제로 파는 경우는 단백질 지방 섬유질의 함량을 표시할 필요는 없고 광물질과 비타민의 성분을 정확히 표시할 것이다.

④ 주문에 의하여 만들어진 사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송장에 기록되어야 한다. 즉 배합자의 이름 및 주소 주문자의 성명 및 주소, 배달(판매)한 일자 목장의 상표 및 사용된 단미사료와 첨가사료의 이름 이 송장은 사료의 배달과 동시에 배달되어야 한다.

⑤ 배합사료에 첨가된 약품이나 화학물질은 적절한 경고와 사용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팔거나 제공하거나 제조하려는 자는 사료의 성분함량 명칭 및 1파운드 이상의 대표될만한 사료를 봉해서 "Commissioner"에게 등록하도록 되어있다.

나) 단미사료의 규격있음

2) 사료검사기관
농업 Commissioner

다. 일 본

1) 공정규격

혼합사료의 배합사료 단체사료 규격으로 구분되어있다.

조단백질 조지방의 최소량

조섬유 조회분의 최대량

DCP TDN의 지도 목표설정

2) 사료검사기관

비사료 검사소

도쿄 검사소의 5개소

4. 사료검사제도에 있어서의 문제점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요인을 분석하여 볼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들수 있다.

가. 단미사료의 공정규격 제정의 필요성
검사강화 사료의 품질보장 내지는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배합사료의 검사강화도 중요하겠

으나 이의 원료가 되는 단미사료의 품질보장이 선행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속히 단미사료의 규격을 제정하여 검사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단미사료의 품질을 저해하는 요인등을 들면

- 1) 패분에 토사혼합
- 2) 식물성 박류사료에 강류혼합
- 3) 수분 첨가로 증량증대
- 4) 어분의 수분 및 불순물 혼합
- 5) 어분 건조시 파리구제를 목적으로 농약살포 등

나. 행정처분

1) 현재 일반조성분 함량차이 정미증량 미달 또는 제조 년월일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나 조성분 검사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데도 절대적인 품질의 우열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공정규격을 보완하여 가소화 성분이나 필수성분을 규정하므로써 진실로 불량한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메이커를 진단하는 합리적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하겠다.

다. 이물질 검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료검사업무 취급요령을 보면 동 요령 제13조에 이물질검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이물질의 혼입한계를 별도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지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음을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동 요령 제13조(이물질검정) ① 이물질이란 가축, 가끔에 대하여 전혀 무가치한 것 또는 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이것을 혼입함으로써 사료의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② 사료의 이물질 감정에 대하여는 이학적 감정 및 화학적감정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물질등을 감정한다.

왕겨분말(용량제), 짚분말(용량제), 톱밥, 대패밥(용량제), 낙화생껍질(용량제), 토사제(중량제), 쇠붙이(중량제), 초사세편(중량제), 파마자유박(유독성), 동실유박(유독성).

다만 상기 이물질의 혼입 한계는 별도로 정한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이물질 감정만으로 이물질을 완전히 검사할 수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앞

으로 이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원료사료에 이물질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행정당국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본다.

라. 사료검사 기관의 운영

정부 조직법상 독자적인 사료검사 기관의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료검사 제도는 수급을 담당하고 있는 사료담당 직원을 사료검사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있으며 또한 연구를 전담하고 있는 축산시험장이 부득이 검사업무를 협조하는 뜻에서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료검사는 사료의 성분등록으로부터 시료채취 및 사료성분 분석에 이르기 까지 상당한 기술을 필요로 하며 여기에는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숙련된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담당케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사료의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사료검사가 철저히 이루어 져야 할 것이고 사료검사는 어느 기관의 협조로서 계속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전담 검사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5. 해결 방안

이상 제시한 여러가지 문제를 토대로 우리는 사료관리법을 조속히 개정 보완하여 배합사료의 규격개정과 검사제도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고 배합사료는 공정규격을 정할 필요는 없으나 일반 조성분 이외에 사료에 배합된 원료명, 광물질, 사료 첨가시의 최대 및 최소량의 표시 첨가된 약품이나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적절한 경고와 사용방법 이 주문사료에 있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부가 지시한 사항을 반드시 기입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리고 검사(분석)가 어려운 가소화 성분이나 미량요소에 대하여는 지도 목표를 설정하여 사료의 품질보장으로 가축이 지니고 있는 유전적 형질을 충분히 발휘하여 양축 소득증대가 실현되도록 선도하여야 하고 아울러 이물질 검사를 강화하여 원료사료를 생산하거나 또는 판매하는 중간상인이 용량제나 중량제를 혼합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근절시켜야 할 것이며 그리고 이와같은 검사 제도의 원활한 생활을 위하여 양축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사료의 품질관리를 전담할 사료검사기관의 설치와 검사의 합리적 강화가 있기를 고대해 마지 않는다.

